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주)케이시크

대한민국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남로9번길 71, 향천
빌딩 3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6월 05일 (05.06.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20170906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7/009771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7년 09월 06일 (06.09.2017)

우선일 (일/월/년)

국제특허분류(IPC)
A63F 9/18(2006.01)i, A63F 13/798(2014.01)i, A63F 13/45(2014.01)i

출원인
(주)케이시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p>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p> 	<p>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6월 04일 (04.06.2018)</p>	<p>심사관 변성철 전화번호 +82-42-481-8262</p> 
---	--	---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2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2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1683381 B1 ((주)케이시크) 2016.12.06

2.1 신규성 및 진보성

청구항 제1항-제12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퀴즈서버가 특정 퀴즈의 정답을 설정하는 단계(청구항 1 참조);

퀴즈서버가 참여단말로부터 특정 퀴즈에 대한 답변을 수신하는 단계(청구항 1 참조);

퀴즈서버가 답변의 채점결과를 판정하고, 퀴즈서버가 특정 퀴즈에 대한 상기 채점결과를 누계하여 정답자 수, 오답자 수, 정답자 비율, 오답자 비율, 오답횟수, 획득 포인트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누계 값을 산출하고, 상기 누계 값으로부터 성과를 산정하는 단계(청구항 1 참조);

퀴즈서버가 상기 성과가 특정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로부터 퀴즈결과를 판정하는 단계(청구항 1 참조); 및

특정퀴즈를 제시하거나 설명한 특정인 또는 특정팀에게 퀴즈결과를 반영하는 제 1방식 또는 복수의 퀴즈풀이 참가자로 구성된 특정팀에게 퀴즈결과를 반영하는 제 2방식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퀴즈결과를 반영하는 단계(단락 [0042] 및 도면 2 참조)를 포함하는 온라인 스피드 퀴즈 게임 제공 방법(청구항 1 참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1.1 독립항 제1항 및 제8항

청구항 제1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은 상기 인용문헌 D1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항 제1항은 상기 인용문헌 D1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8항에 기재된 발명은 스피드 퀴즈게임 제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공시스템의 기능은 청구항 제1항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과 동일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이유가 청구항 제8항의 상기 제공시스템의 특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1. 특이 공개문헌 (PCT규칙 43의2.1 및 70.10)

	출원번호 특허번호	공개일 (일/월/년)	출원일 (일/월/년)	우선일(유효한 우선권주장) (일/월/년)
E	KR 10-2016-0077925	02/01/2018	22/06/2016	없음

특허출원 KR 10-2016-0077925(공개특허 KR 10-2018-0000141 A)는 PCT 규칙 64.3의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청구항 제 1항 내지 제12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비서면에 의한 개시 (PCT규칙 43의2.1 및 70.9)

비서면에 의한 개시의 종류	비서면에 의한 개시일 (일/월/년)	비서면에 의한 개시를 언급하고 있는 서면의 개시일 (일/월/년)
_____	_____	_____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1항의 ‘상기 특정 퀴즈풀이’ 는 이전에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청구항 제2항-제3항에 기재된 ‘특정인 또는 특정팀’ 이 청구항 제1항의 ‘특정 퀴즈풀이에 기여한 특정인이나 특정팀’ 혹은 ‘퀴즈풀이참가자가 포함된 특정팀’ 중 어느 부분을 지시하는지 불명료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제3항은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따라서 청구항 제1항 및 제8항은 PCT 제33조(2)에 따라 신규성이 없습니다.

2.1.2 종속항 제2항-제7항 및 제9항-제12항

청구항 제2항-제7항 및 제9항-제12항은 각각 청구항 제1항 및 제8항의 종속항입니다.

청구항 제2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퀴즈서버가 퀴즈결과를 특정인 또는 특정팀에게 상기 퀴즈결과를 반영하는 단계는 특정인 또는 특정팀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거나 삭감하는 제1 방식, 특정인 또는 특정팀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시 제한하거나 회복하는 제2 방식, 특정인 또는 특정팀에게 경품지급을 결정하는 제3 방식, 퀴즈결과를 퀴즈단말 또는 운영단말에 전송하는 제4 방식, 퀴즈서버의 출력장치를 통해 퀴즈결과를 표출하는 제5 방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또한 목표의 달성여부는 실패횟수를 초과해 입력하면 실패로 판정하는 점'(단락 [0118] 및 청구항 2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3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퀴즈서버는 특정인 또는 특정팀에 대하여 여러 단계의 퀴즈게임을 운용한 후 누적된 퀴즈게임 결과를 생성하는 점'(청구항 3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4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답변을 채점결과를 판정하는 단계는 운영단말로부터 채점결과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채점결과로 대체하는 점'(청구항 4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5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운영단말로부터 퀴즈결과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퀴즈결과로 판정과정을 대체하는 점'(청구항 5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6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퀴즈서버가 제한시간을 설정하는 점과 목표를 설정하는 점'(청구항 6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7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퀴즈서버는 복수의 퀴즈단계에 대하여 모든 퀴즈단계가 종료되면 퀴즈게임의 결과정보를 생성하고, 결과정보를 운영단말 또는 참여단말로 전송하거나 디스플레이에 표출하는 점'(청구항 7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9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정답과 목표를 입력받고 이를 퀴즈서버로 전송하고, 정지신호를 입력받거나 제한시간을 입력받아 퀴즈서버로 전송하는 운영단말을 더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포함하고 퀴즈서버는 정지신호가 도착하면 퀴즈단계의 답변수신을 정지하고, 정답과 목표를 수신하면 정답과 목표를 퀴즈단계에 설정하는 점'(청구항 9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10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운영자가 채점결과 정보를 입력하면 채점결과를 퀴즈서버에 전송하는 운영단말을 더 포함하고, 퀴즈서버는 운영단말로부터 채점결과를 수신하면 직접 퀴즈결과를 판정하지 않고 수신된 채점결과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점'(청구항 10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11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운영자가 퀴즈결과 정보를 입력하면 퀴즈결과를 퀴즈서버에 전송하는 운영단말을 더 포함하고, 퀴즈서버는 운영단말로부터 퀴즈결과를 수신하면 직접 퀴즈결과를 판정하지 않고 수신된 퀴즈결과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점'(청구항 11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12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퀴즈서버로부터 전송받은 퀴즈진행과 관련한 결과정보를 디스플레이 또는 스피커 등의 출력장치에 출력하는 점'(청구항 12 참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제7항 및 제9항-제12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기 인용문헌 D1으로부터 예측가능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라 신규성이 없습니다.

2.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제12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